

뉴저지 주 사법부

자녀 양육 심문관 프로그램 - 한국어

Child Support Hearing Officer Program - Korean

New Jersey Courts

www.njcourts.gov



Independence • Integrity
Fairness • Quality Service

뉴저지 주 사법부
법원 행정처
가정소송부
뉴저지 주 트렌톤 08625

자녀 양육 심문관 프로그램이란 무엇인가?

자녀 양육 심문관 프로그램이란 뉴저지 법원 행정처의 가정소송부가 관리하는 것으로 주 전체의 자녀 양육 사건들을 심리하는 심문관들로 구성됩니다. 자녀 양육 심문관들의 권한과 의무는 *뉴저지 주 법원에 관한 규칙 5:25-3*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재정적 지원을 신청하는 가정들을 위해 법원으로부터 “신속 처리”라고 하는 빠른 이용과 구제책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누가 자녀 양육 심문관인가?

자녀 양육 심문관은 뉴저지 주 대법원의 수석 판사가 임명하고, 자녀 양육 사건들을 심리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들은 변호사 및 /또는 자녀 양육 분야의 유자격 전문가들입니다.

자녀 양육 심문관들은 무슨 일을 하는가?

자녀 양육 심문관들은 증언을 듣고, 서류들을 심사하고, 증거를 고려하며, 자녀 양육 의무를 확정, 수정 또는 집행 하기 위하여 상급법원 판사에게 추천을 합니다. 판사는 추천을 검토하고 서명하여, 그것을 법원 명령으로 제정합니다.

친자 관계의 확정

많은 자녀 양육 사건에서, 자녀 양육 심문관들은 친자/법적 부자 관계를 결정합니다. 소장에 아버지로 기재된 사람은 친자 관계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유전자 검사를 요청할 권리가 있으며, 혹은 자발적으로 친자관계를 인정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의 확정

친자 관계가 확정되면, 심문관은 뉴저지 주 자녀 양육비 지침서를 근거로 하여 자녀 양육비의 금액을 추천합니다. 자녀 양육비 지침서를 사용하여 어떻게 양육비를 계산하는지에 대하여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njcourts.gov 에서 *규칙 5:6A* 및 부록 IX-A 를 참조하십시오. 양쪽 부모들은 자녀(들)를 양육할 재정적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 양육 심문관들은 양쪽 부모들의 수입 및/또는 수입 가능 능력을 검토합니다. 양쪽 부모들은 법정에 갈 때 자녀 양육비를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그들의 수입 증빙서류를 가지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들은 자녀 양육비, 직장 관련 탁아비 및 의료비를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지불 명령의 수정/변경

부모 중 누구라도 자녀 양육비 지불 명령을 수정하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자녀 양육비 지불 명령이 처음 등록된 카운티(또한 재판지 카운티라고도 함)에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이 법원 명령을 수정하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 그들의 사정이 달라진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한쪽 부모가 더 이상 똑같은 금액의 수입을 얻을 능력이 없거나, 감옥에 있거나, 또는 자녀(들)을 위한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에 자녀 양육비의 금액을 수정하기 원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는 부모는 사정이 변경되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정의 변경이 확정되면, 심문관은 자녀 양육비 지침서를 사용하여 자녀 양육비 금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모든 자녀 양육비 명령과 판결은 생활비 증가에 영향을 받습니다. 보호관찰부의 감시를 받는 양육비 지불 명령은 법률과 법원 규칙에 따라 생활비 증가가 적용되고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3 년마다 검토를 받습니다.

전화/원격으로 심리에 참여

경우에 따라서, 당사자들이 전화로 법정 심리에 참여하는 것이 허락될 수 있습니다. 전화 심리가 고려되는 사건들은 특정한 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원격으로 심리에 참여하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요청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먼저 사건의 일정이 잡힌 카운티의 가족 또는 보호관찰부에 연락해야 합니다. 가족 또는 보호관찰부는 양식을 보내드리며 그 양식을 작성하여 적어도 심리일로부터 7 일 이전까지 반송해야 합니다. 원격 심리는 사건을 심리하는 판사 또는 심문관에 의한 법정의 재량으로 승인됩니다.

양육비 지불 명령의 집행

만약 부모가 자녀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으면, 자녀 양육 심문관은 다음과 같은 집행 구제책을 추천하여 명령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급여에서 자녀 양육비를 직접 공제(또한 급여 공제라고도 함), 미지불(체납)된 자녀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불로 부과, 정기적인 지불 금액을 체납 금액에서 공제하라는 명령, 부모의 운전면허증을 정지, 또는 구금. 자녀 양육 심문관은 법정 명령을 준수하지 않아 법정에 출두하도록 소환되고 심리에 출두하지 않은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한 판사의 영장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건을 자녀 양육 심문관이 심리하는 경우, 귀하의 권리

귀하의 주장을 제출할 권리

사건의 당사자들은 관련된 증언을 제공하고, 서류를 제출하며, 증인들을 반대 심문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녀 양육 심문관의 추천을 항소할 권리

심문관의 추천에 동의하는 당사자들은 추천서에 서명하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그들은 심리가 끝날 때 추천서의 사본과 자녀 양육비 지침서 작업표를 받습니다. 그러나, 심문관의 추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들은 상급법원 판사 앞에서 즉시 새 심리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항소 또는 재심리라고 합니다. 당사자는 누구든지 항소를 신청할 수 있고, 당사자들은 사건을 심리할 판사 앞에 출두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대리를 받을 권리

사건 당사자는 본인을 대리할 수 있거나(자기 대리 또는 자기 변호라고 함), 또는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지불하라는 법정 명령을 받은 부모들에게는 변호사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에 관한 정보를 원하시면, 당사자들은 lsnj.org 에 게시된 뉴저지 주 법률 서비스, 또는 njsba.com 에 게시된 뉴저지 주 변호사 협회 변호사 소개 서비스로 연락하십시오.

통역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

영어 능력이 제한적인 사람들은 통역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역사는 무료로 제공되고, 수화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언어들을 제공합니다. 통역사 신청은 가능한 한 빨리, 신청서를 제출 할 때 또는 출두 통지서를 받을 때, 그리고 심리일 이전에 해야 합니다.

불출두

고소장, 명령 신청 또는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적절한 통지를 하지 않고 심리에 출두하지 않는 경우, 그러한 서류들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법정에 출두하라는 통지를 받고 출두하지 않는 경우, 심문관은 쥘석 명령(그 사람이 출두하지 않았을 때 내리는 명령) 및/또는 심리에 출두하지 않은 사람을 체포하는 판사의 영장입니다. 자녀 양육 사건으로 발부된 체포 영장을 받은 사람은 뉴저지 주 운전면허증이 부인거절,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제한된 권한

자녀 양육 심문관들은 판사가 아닙니다. 그들은 특정한 조건 하에서 특정한 사건들을 심리할 권한이 있고, 양육비 지불 명령의 확정, 집행 또는 수정을 추천합니다. 자녀 양육 심문관 프로그램에 관한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의 주소로 보내십시오:

뉴저지 주 사법부
(Administrative Office of the Courts)
법원 행정처
(New Jersey Judiciary)
PO Box 983
Trenton, NJ 08625
609-815-2900 구내전화 55360

자녀 양육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자녀 양육 고객 연락 센터
1-877-NJKIDS1
1-877-655-4371

뉴저지 주 사법부
njcourts.gov

뉴저지 주 자녀 양육 정보
njchildsupport.org

자녀 양육 집행 연방 사무소
acf.hhs.gov/programs/css

이 소책자는
뉴저지 주 사법부
가정소송부가 발행합니다.

스튜어트 래브너
수석판사
Stuart Rabner
Chief Justice

글렌 A. 그랜트, J.A.D.
법원 행정처장 대행
Glenn A. Grant, J.A.D.
Acting Administrative Director of the Courts

제니퍼 M. 페레즈
1 심법원 실장
Jennifer M. Perez
Director, Trial Court Services

조안 M. 디트리크
가정소송부 부실장
Joanne M. Dietrich
Assistant Director, Family Practice

낸시 L. 매뉴엘
자녀 양육 심문관 프로그램 부장
Nancy L. Manuele
Chief, Child Support Hearing Officer Program